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인사운영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중 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특례의 대상 적용 범위를 기존 5급에서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고, SOC분야와 통상분야를 추가하여 운영하며, 모든 직원에 대하여 복무 자기결재 관련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인사운영 특례 규정의 적용기간을 '25년부터 '26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용된 5급”을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정책관”을 “국토분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정책관”을 “도시분야”로, “스마트도시팀)”을 “도시재생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SOC분야(건설안전과, 도로시설안전과, 철도운영과, 철도시설안전과) 내 전보

4. 통상분야(국제협력통상담당관, 모빌리티자동차국) 내 전보

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용일부터 4일 이전에 통보한 1일의 연가 또는 반일 연가

2.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한 유연근무로서 1시간의 범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1조에 따른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13]

교육훈련시간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함
 -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기 위하여 승진심사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정하는 교육훈련실적(이하 “실적 교육훈련시간”이라 한다)에 합산할 수 있음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산출기준일 현재 당해 계급에서의 전체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기준시간”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계산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근무연수 : “근무월 ÷ 12”로 계산하되, 근무월은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함
 - * 근무월은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 근무월 산정시점은 ‘08.1.1일부터임(’08년 통합부처)

[예 시]

- 근무기간이 ’ 07년도 6개월 10일, ’ 08년에 7개월 20일인 경우의 근무월은?
→ 역에 의한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 07년은 6월, ’ 08년 8월임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 [별표10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 파견·휴직기간, 기관간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 호 (제4호를 제외한다)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같은 법 제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한다)을 반영할 수 있음
 - *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예 시]

- 2002.10.1자로 승진임용된 A청의甲사무관이 2008.2.1자로 B부로 기관간 전보 되었을 때, 2008.2.28일 기준의 서기관 승진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甲사무관의 필요 교육훈련시간은?
<B부의 교육훈련 기준 시간>
 - '07년 기준 시간 : 10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20%)
 - '08년 기준 시간 : 200시간 (민·관 교육기관 교육 이수 비율 40%)
 - ① 전보 이후부터 적용하는 경우(원칙)
 - 필요 교육훈련시간 : $(\text{근무월 } 1\text{월} \div 12) \times 200 = 0.1 \times 200 = 20\text{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20\text{시간} \times 0.4 = 8\text{시간}$
 - ② 전보 이전부터 반영하는 경우(예외)
 - ⇒ 상시학습제도가 시행된 '07년부터 기산
 - 필요 교육훈련시간 : $100\text{시간}(\text{'07년 전체}) + 40\text{시간}(\text{'08년 2월간}) = 140\text{시간}$
 - 민·관 교육훈련시간 : $20\text{시간}(\text{'07년 전체}) + 16\text{시간}(\text{'08년 2월간}) = 36\text{시간}$

□ 신규채용 및 승진후보자의 기본교육 처리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봄

□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적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 하는 경우, 승진에 필

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71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5급 공무원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 ----- ----- ----- 채용된 ----- ----- ----- ----- ----- --.
1. 국토정책관(국토정책과, 수도권정책과, 지역정책과, 산업입지정책과, 성장거점정책과) 내 전보	1. 국토분야----- ----- ----- --
2. 도시정책관(도시정책과, 도시경제과, 도시활력지원과, 녹색도시과, 스마트도시팀) 내 전보	2. 도시분야----- ----- ----- 도시재생과) ----- --
<신 설>	3. SOC분야(건설안전과, 도로시설안전과, 철도운영과, 철도시설안전과) 내 전보
<신 설>	4. 통상분야(국제협력통상담당

④ 삭 제

<신 설>

관, 모빌리티자동차국) 내 전
보

⑤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
정」 제10조제3항 및 제16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연가 또는 유연근무의 신청 없
이 그 사용일을 정하여 통보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연가 또는 유연근무
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용일부터 4일 이전에 통보
한 1일의 연가 또는 반일 연가

2. 사용일부터 2일 이전에 통보
한 유연근무로서 1시간의 범
위에서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 이 경우 유연근무
당일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을 제외하고 8시간이어야 한
다.